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8월 13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7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8일)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13일)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후덕 의원)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그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

윤후덕의원, 박충권의원, 김건·홍기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